

【 9 】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2002. 7. 8

제출자 양주군수

1. 개정이유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승인 받은 한시기구중 청소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과를 폐지하고 종전의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청소과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
- 나. 종전 청소과의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함(안 제4조제2항제9호)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증 청소과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8호중 “자”목을 삭제하여 “자목 내지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9호를 삭제하며, “제10호 내지 제15호”를 “제9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 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립
- 차.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유지관리
- 카. 폐기물 재활용 업무
- 타. 쓰레기 종량제 시행
- 파. 청소대행업체 관리
- 하. 감염성폐기물 발생업소 관리
- 거. 가로청소 관리 업무
- 너. 기타 환경보호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생활민원과, 허가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를 둔다.	제4조(실·과의 설치) ① _____ _____ _____ <u>〈삭제〉</u> _____
② (생략)	
1~7 (생략)	
8. (생략)	
가~아(생략)	
<u>〈신설〉</u>	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립
<u>〈신설〉</u>	차.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유지관리
<u>〈신설〉</u>	카. 폐기물 재활용 업무
<u>〈신설〉</u>	타. 쓰레기 종량제 시행
<u>〈신설〉</u>	파. 청소대행업체 관리
<u>〈신설〉</u>	하. 감열성폐기물 발생업소 관리
<u>〈신설〉</u>	거. 가로청소 관리 업무
자.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너. 기타 환경보호 및 청소 업무에 관한 사항
9. 청소과장	
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립	<u>〈삭제〉</u>
나.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유지관리	<u>〈삭제〉</u>
다. 폐기물 재활용 업무	<u>〈삭제〉</u>
라. 쓰레기 종량제 시행	<u>〈삭제〉</u>
마. 청소대행업체 관리	<u>〈삭제〉</u>
바. 감열성폐기물 발생업소 관리	<u>〈삭제〉</u>
사. 가로청소 관리 업무	<u>〈삭제〉</u>
아. 기타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u>〈삭제〉</u>

현 행	개 정 안
<u>10. 농림축산과장</u> 가.~처. (생 략)	<u>9.</u> (현행 제10호와 같음)
<u>11. 지역경제과장</u> 가.~더 (생 략)	<u>10.</u> (현행 제11호와 같음)
<u>12. 건설행정과장</u> 가.~자. (생 략)	<u>11.</u> (현행 제11호와 같음)
<u>13. 도로과장</u> 가.~자. (생 략)	<u>12.</u> (현행 제11호와 같음)
<u>14. 도시과장</u> 가.~카. (생 략)	<u>13.</u> (현행 제11호와 같음)
<u>15. 주택과장</u> 가.~자 (생 략)	<u>14.</u> (현행 제11호와 같음)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개정구분 : 부분개정

개정이유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하여 승인 받은 한시기구중 청소과의 존속기한이 2002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청소과를 폐지하고 종전의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주요골자

가. 청소과를 폐지함(안 제4조제1항)

나. 종전 청소과의 업무를 환경보호과로 이관함(안 제4조제2항제9호)

개정조례(안) :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상황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기타참고사항 : 현행조례(전문)

양주군 한시기구 연장승인 요구 검토

□ 승인 요구사항

- 경기도 양주군에서 읍면기능전환 시범실시와 관련 승인 받은 한시기구 2개과중 1과가 금년 6.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 연말 인구 15만명 초과에 따른 행정기구 증설(13→15과), 도농복합市 설치 추진 등을 감안 존속기한 연장(1년) 건의

□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운영 현황

- 1단계 동기능전환 사구(일반구 포함 108시구) : 108과·5급 108명 - '02.12.31한
 - 전체동 시범시구(10시구)는 '99. 7부터 시구별 1과·5급 1명(인구규모 등 고려 5시구는 각 2과·5급 2명) 설치 승인(2002.12.31한), 다만 2과 설치 시구의 1과는 2001.12.31까지 승인(정비완료)
 - 전체동 시범시구외 사구(일반구포함 103시구)는 2000.7부터 시구별 1과·5급1명 설치 승인(2002.12.31한)
- 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사군(일반구 포함 139시군구) : 139과, 5급 139명 - '02.12.31한
 - 전제읍면 시범 군(3군)은 2000.7부터 군별 1과·5급 1명(인구규모 등 고려 양주군은 2과·5급 2명) 설치 승인(2002.12.31한), 다만 2과 설치 양주군의 1과는 2002.6.30까지 승인
 - 전체읍면 시범군외 시군(일반구포함 136시군구)은 2001.7부터 시구별 1과·5급 1명 설치 승인(2002.12.31한)

□ 검토 의견

- 기능전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한시기구는 시군구별 1과(5급 1명) 설치 원칙으로서 인구규모 등을 고려 2과(5급 2명) 설치 시군의 경우
 - 1과의 단계적 정비방침에 따라 기간 만료시 정비완료 하였는바, 양주군의 경우 1과 연장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결여 및 무분별한 연장승인 요구 우려
-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기구 증설, 향후 도농복합시 승격을 대비한 기한 연장은 읍면동기능전환 추진과 무관한 것으로 한시기구 운영취지와 배치됨
- 따라서, 2과중 1과는 당초 한시기구 설치 원칙대로 금년 6.30까지만 존속시켜, 전 시군구에 1과(5급 1명) 설치 원칙 준수 바람직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1995. 2. 25]
[조례 제1523호]

전문개정 1998. 10. 14 조례 제1684호
개정 1999. 5. 10 조례 제1703호
개정 1999. 11. 15 조례 제1723호
개정 2000. 9. 25 조례 제1753호
개정 2001. 9. 29 조례 제1779호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
개정 2001. 12. 3 조례 제178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11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부 군 수

제3조(부군수) ①군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군수 밑에 부군수를 둔다.

②부군수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소속공무원의 지도·감독

제 3 장 군 본 청

제4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총무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과, 생활민원과, 허가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농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도시과, 주택과를 둔다.

②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 가. 군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 나.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분석
- 다.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업무협조
- 라. 법제 및 소송업무 수행
- 마. 군정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바. 언론·홍보자료의 수집 및 방영
- 사. 군정의 계몽선전 및 홍보
- 아. 홍보매개체의 보급·육성
- 자. 공고·고시업무 및 게시판 관리
- 차. 출판사·인쇄사의 등록
- 카. 지방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타. 지방채운영 및 관리
- 파.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시행
- 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
- 거. 군수공약사항 추진
- 너. 학교유치 및 교육청과의 업무협조
- 더. 군행정의 감사
- 러. 진정서 처리 및 비위조사
- 머. 기타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법무, 경영수익, 장기발전추진 행정에 관한 사항

2. 총무과장

- 가. 직제, 정원, 인사
- 나. 포상 및 의전행사
- 다. 공무원의 보수, 후생복지, 연금, 교육
- 라. 행정구역 개편
- 마. 선거 및 국민투표
- 바. 각종 위원회 관리
- 사. 지방행정 시책업무
- 아. 당정협조에 관한 사항
- 자. 서무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차. 보안업무

- 카. 복무단속 및 하부행정기관 지도감독
- 타. 사무관리 및 제도개선
- 파.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및 보존관리
- 하. 공인관리
- 거. 방위협의회 운영
- 나. 충무계획 주민 및 관서이동
- 더. 통계조사
- 러. 새마을운동에 관한 군 시책의 종합계획 조정통제
- 마. 새마을지도자 관리
- 비. 새마을 국민교육
- 서. 새마을금고, 문고의 지도·육성·감독
- 어.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의 지도·육성·관리
- 저. 자유수호 계몽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 처. 통신시설 및 행정장비 유지관리·개선
- 커. 행정장비 전반에 관한 사항
- 티.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업무의 조정·통제
- 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지원
- 허. 기타 인사, 서무, 새마을, 민간협력, 자치지원, 통계, 전산, 통신에 관한 사항

3. 생활민원과장

- 가. 민원실의 설치 운영
- 나. 호적, 주민등록증, 행정사 업무
- 다. 위민업무에 관한 사항
- 라.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요구
(민원처리기간 단축, 절차간소화등 제도개선, 주민편의시책개발 등)
- 마. 생활민원의 접수·관리
- 바. 주민건의사항의 관리
- 사.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 아.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및 택지소유부담금, 개별공시지가
- 자. 외국인 토지취득관리 및 소유권정리에 관한 사항
- 차. 토지기록전산화시스템 관리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 카. 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 타. 대행법인 지도감독 및 측량자료(기초점) 관리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 파.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 하.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 거. 민방위계획의 수립·시행
- 너. 민방위장비 유지·관리
- 더.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계획의 수립, 확인, 조정 및 실시
- 러. 병사, 예비군업무
- 더. 궁역근무요원 관리업무 총괄

4. 허가과장

- 가.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 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 다. 식품접객영업 허가·신고
- 라.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 마.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등록·관리
- 바.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 사. 산림형질변경 허가·협의
- 아. 개발행위 허가·신고
- 자. 농지전용 허가지 사후관리
- 차.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입지기준확인 포함)
- 카. 창업사업계획 승인
- 타. 공장사후관리 업무
- 파.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 하. 건축물 사후관리(준공시까지)
- 거. 건축물대장 관리

5. 세무과장

- 가. 지방세(군세)제도의 운영
- 나.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 다. 지방세 구체업무
- 라.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 마. 세외수입 징수 및 세원조사
- 바. 기부금품 통제
- 사. 군 금고 지도감독 및 자금관리
- 아. 공채, 국채, 금융관련 채권 관리
- 자. 기타 세무,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6. 회계과장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 가. 세출예산의 경리
 - 나. 물품의 구입, 조달, 출납, 보관·관리
 - 다. 지출원 사무
 - 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보관
 - 마. 회계관계공무원의 관리
 - 바. 공유재산 대부 및 관리, 위임관리 국유재산의 처분·대부 및 관리
 - 사. 물품출납, 보관 및 처분
 - 아. 차량운영 및 운전원 관리
 - 자. 청사관리 및 영선에 관한 사항
 - 차. 기타 경리, 용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과장
- 가. 생활보호, 구호, 후생, 원호대책
 - 나.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 다. 장애인 복지업무
 - 라. 의료보호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운영
 - 마. 행여사망자 처리
 - 바.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계획
 - 사. 묘지, 화장장, 낭골당 관리
 - 아. 부녀·아동 복지법인의 지도감독
 - 자.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지도감독
 - 차.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 카. 부녀자의 직업보호
 - 타. 윤락여성의 선도보호
 - 파. 아동복지증진
 - 하. 부녀·아동 상담 및 상담소운영 지도감독
 - 거. 부랑자 방지
 - 너. 고아, 기아, 부랑아, 정신박약아의 보호
 - 더. 노인복지 대책
 - 러. 가정의례준칙 지도
 - 미. 청소년육성계획의 수립 및 추진
 - 비. 청소년보호법 관련업무
 - 서. 접객업, 유통업에 대한 단속('99. 5. 10)
 - 어. 체육공원 조성
 - 저. 국민여가시설 확충 및 여가활동 지원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처.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사항
- 커. 체육진흥 및 체육회 업무지원
- 터. 국제 체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 페. 유해음식물 단속
- 허. 접객부 및 종업원의 등록, 위생지도
- 고. 기타 사회, 위생, 가정, 여성복지, 체육,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8. 환경보호과장

- 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조정
- 나.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
- 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 라. 환경오염의 조사분석 및 오염도 측정
- 마.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
- 바. 오수정화시설 설치운영 및 지도단속
- 사.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및 환경감시 관련 업무
- 아.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및 지도감독
- 자. 기타 환경보호와 관련된 사항

9. 청소과장

- 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건립
- 나.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유지관리
- 다. 폐기물 재활용 업무
- 라. 쓰레기 종량제 시행
- 마. 청소대행업체 관리
- 바. 감염성폐기물 발생업소 관리
- 사. 가로청소 관리 업무
- 아. 기타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10. 농림축산과장

- 가.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나. 농지의 보존·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 다.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
- 라.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 마. 영농기계화추진 및 농업경영합리화
- 바.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 사. 양곡의 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 등에 관한 업무
- 아.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자. 임업증산 및 기술보급
- 차. 수자원보호 및 수산물증식등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
- 카. 축산행정의 종합기획
- 타. 가축의 증식, 개량, 위생 및 공수의 지도감독
- 파. 도축장 및 가축시장 관리
- 하. 동물병원 및 동물약품 판매 지도감독
- 거. 식육관제업소 영업신고 및 관리
- 너. 가축방역사업
- 더. 축산업경쟁력제고사업 및 축산단지 조정관리
- 러. 사료수급계획 및 관리
- 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 버. 산림기본계획 수립
- 서. 국공유임야 관리
- 어. 농업용 수원의 개발, 보존관리 및 관계개선
- 저. 경지정리 및 개간
- 처. 기타 산업, 축산, 기반조성, 산림에 관한 사항

11. 지역경제과장

- 가. 지역경제 및 공업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 나.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 다. 수출진흥과 과학기술진흥
- 라. 시장개량 및 관리
- 마.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무
- 바. 중소기업 육성지도
- 사. 산업단지조정 및 육성지도
- 아. 공산품 품질관리
- 자. 저축업무 및 금융지원 지도감독
- 차.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무
- 카. 에너지 소비절약
- 타. 노동대책
- 파. 직업알선 및 직업안내소 관리
- 하. 교통에 관한 종합 계획
- 거. 철도교통 관련 업무
- 너. 교통질서제도 관련 업무
- 더. 공업용지 조성 관리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러. 기타 지역경제, 공업, 기업지원, 교통, 노정업무에 관한 사항

12. 건설행정과장

가. 하천의 이용, 보존관리, 감시(비법정 하천 포함)

나. 도선 및 유선에 관한 사항

다.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라. 의용소방대 운영지도

마. 중앙 및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용지보상

바. 하수도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사. 하수도 시설의 확충

아. 하수도 관리 및 차집관거 사업

자. 기타 건설, 재난관리, 용지보상, 하수에 관한 사항

13. 도로과장

가. 토목공사의 측량, 설계, 시공 지도감독

나. 도로의 포장 및 유지관리(농어촌, 비법정도로 포함)

다. 도로안내판의 설치 및 보존관리

라.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관리

마. 전철사업 추진 업무

바. 소도읍 가꾸기

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 광고물 관리

자. 기타 도로, 개발행정에 관한 사항

14. 도시과장

가. 군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나.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다. 국토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

라.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추진

마. 국토이용계획관리법에 관한 사무

바. 공업단지 조성(공영개발방식)

사.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

아.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업무

자. 군사시설보호법 관련업무 및 단순민원업무

차. 경원선 복선 전철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카. 기타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15. 주택과장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체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 가. 건축허가 및 무허가건물 단속
- 나.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 관리
- 다. 주택건설 및 건축사, 건축업자 관리감독
- 라. 주택자재 생산업자 관리
- 마. 택지조성의 종합계획 및 설계
- 바.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사. 공공시설건립추진 및 하자보수
- 아. 공공시설들의 유지보수(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을 포함)
- 자. 그 밖에 주택행정에 관한 사항

제 4 장 직 속 기 관

제 1 절 보건소, 보건지소

제5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의 지역보건법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통합보건지소 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보건 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 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과 제2항 규정에 의한 보건 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장)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군수의, 지소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업무) ①보건소 및 통합보건지소·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 2 절 농업기술센터

제8조(설치) ①법 제104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掌하게 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총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둔다.

②관내 농업인들에게 보다 신속한 농업기술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둔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와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업인 상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와 같다.

제9조(소장) ①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농업인 상담소에 상담소장을 두며 상담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한다.

제10조(업무) ①농업기술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촌생활개선사업
 3. 농업경영 개선 및 지도
 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기술지도
 5.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기술개발
 6. 농업인교육 지도
 7.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에 필요한 사항
- ②농업인 상담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내방 농업인 상담 및 전화상담
 2. 농업인 교육 및 지도

제 5 장 사 업 소

제11조(설치) ①법 제10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특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4”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관광사업소장
 - 가. 정부시책 또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및 무용의 공연
 - 나. 군민의 공공집회 및 학술, 예술의 행사장소 제공
 - 다. 군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공간 제공
 - 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및 산업 전시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 마. 기념행사 및 일반 문화행사
 - 바.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감독
 - 사. 문화재, 전적기념물의 보호관리
 - 아. 향교, 사찰의 재산관리 지도
 - 자. 문화예술단체의 지도·육성
 - 차. 관광선전 및 개발
 - 카. 관광지, 유원지 개발 및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
 - 타. 군지면찬 및 자료수집·분석
 - 파. 국민관광지 시설물관리 및 시설운영
 - 하. 국민관광지내 불법행위 및 행락질서 지도단속
 - 거. 문화예술회관, 국민관광지 시설물 등에 대한 경영수익사업 운영
 - 너. 국민관광지 및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사용허가
 - 더. 입장권의 발매 및 입장료, 사용료, 기타 수입금의 수납관리
 - 러. 군립도서관의 운영관리
 - 머. 기타 문화예술회관 및 국민관광지 설치목적에 따른 제업무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상수도사업소장
- 가.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 나. 상수도시설 확충
 - 다. 송·배수관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
 - 라. 정수의 가압송수 및 급수
 - 마. 정수의 생산 및 수질관리 시험
 - 바. 광역5·6단계 및 임진강 광역상수도 업무 추진
 - 사.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약수터 수질검사
 - 아. 하수도 사용료 징수 업무

제 6 장 하부행정기관

제 1절 읍·면

- 제1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반 조직운영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 제15조(읍·면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관할구역)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읍·면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2 절 회천읍 덕계출장소

제17조(설치) ①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회천 읍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천읍덕계출장소(이하 “덕계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출장소의 위치는 양주군 회천읍 덕계리에 둔다.

제18조(관할구역)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회천읍 덕계리 전지역과 회정리 전지역으로 한다.

제19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업무) 출장소의 업무는 읍 행정 제반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부 칙 (1995. 2. 25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4 조례 제1684호)

제1조(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주군보건소설치조례, 양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양주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 양주군문화관광사업소설치조례,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양주군군립도서관설치조례, 양주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관 통폐합에 따른 관장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립도서관장의 사무는 문화관광사업소장이 승계한다.

제4조(보건지소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3항 관련 “별표1”的 규정에 불구하고 양주군 보건소의 판내이전 및 통합보건지소의 설치운영시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보건지소를 둔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의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5호 “군립도서관”을 삭제하며, 제6호의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②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기획계장이 되며”를 “기획법무업무담당주사가 되며”로, “소관주무계장”을 “소관주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양주군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자치경영계장”을 “장기발전추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④ 양주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간사는 자치경영계장이 되고”를 “간사는 장기발전추진업무담당주사가 되고”로 한다.

⑤ 양주군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계장”을 “문화관광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 양주군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양주군향토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3호의 “행정계장”을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⑧ 양주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⑩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하고,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청소년업무담당계장”을 “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⑪ 양주군청소년대책지방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⑫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건전생활계장”을 “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⑬ 양주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의한 별지1호 및 2호서식 중 “계장확인”을 “업무담당주사 확인”으로 한다.

⑭ 양주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 제7조제2항 중 “실무계장”을 실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⑯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중 “부동산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⑰양주군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⑱양주군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⑲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 중 “내무과장”을 “총무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가정복지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12조제1항제2호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3호중 “가정복지계장”을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⑳양주군여성복지·아동상담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중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제4조제1항중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 ㉑양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중 “지역경제계장”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㉒양주군도로관리실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6항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㉓양주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7조제2항 중 “담당업무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㉔양주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2호중 “재난관리계장”을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㉕양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검사계장”을 “방문보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㉖양주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㉗양주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 ㉘양주군농업개발센터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 제2조, 제3조 중 “양주군농촌지도소”를 “양주군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⑩ 양주군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하고, 제7조, 제8조 제3항, 제11조 제3항 중 “관장”을 각각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⑪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양주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양주군읍·면및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하고, 제1조 중 “법 제4조제4항,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리의 명칭과 구역”을 “법 제4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읍·면 및 리의 명칭과 구역”으로 하며, 제2조의 제목 “리의 명칭과 구역”을 “읍·면 및 리 명칭과 구역”으로 하고, 동조 본문 중 “리 명칭과 관할구역”을 “읍·면 및 리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하며, 본 조 다음 중 “읍·면 명”을 “읍·면 명칭”으로 한다.

부 칙 (1999. 5. 10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15 조례 제1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3호의 개정은 민간위탁협약이 체결되고 시설물 인계인수가 완료된 때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양주군립합창단설치조례 제7조 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하고, 제11조 제2항 중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한다.
2.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사업소장”으로 한다.
3. 양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 및 운영조례 제2조 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4.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5.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 및 관리조례 제6조 제4항 제1호 중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9조 제1항 중 “체육청소년담당”을 “체육업무담당”으로 하며,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문화공보실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체육청소년담당주사”를 “체육업무담당주사”로

(추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 설치조례

한다.

6. 양주군물품관리조례 제30조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7.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5조제3항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8. 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6항중 “건설과”를 “도로교통과”로 한다.
9.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동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행정과장”으로 한다.
10. 양주군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행정과장”으로 한다.

부 칙 (2000. 9. 25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양주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2. 양주군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제6조제4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중 “총무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3. 양주군제2의전국법국민추진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중 “행정업무담당주사”를 “실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4. 양주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6항중 “도로교통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5.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24조제1호 내지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제9호 내지 제10호를 삭제하고 제11호 내지 제13호를 제4호 내지 제6호로 하며 제14호 내지 제15호를 삭제한다.

부 칙 (2001. 9. 29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 조례 제17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읍면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중 청소과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생활민원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총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1)

통합보건지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양주군보건소 온남통합보건지소	양주군 온현면 운암리 양주군 남면 상수리	온현면, 남면, 광적면 일원
양주군보건소 장흥지소	양주군 장흥면 일영리	장 흥 면

(주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

(별표 2)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만송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산 154-2	삼송리 일원 만송리 일원 고읍리 일원 광사리 일원
봉암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404	봉암리 일원 하폐리 일원 남면 한산리 일원
매곡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남면 매곡리 305	매곡리 일원 구암리 일원 신암리 일원 광적면 효촌리 일원
연곡리 보건진료소	양주군 백석읍 연곡리 267-8	연곡리 일원 홍죽리 일원 광적면 우고리·비암리 일원

(총4)

제3편 총무 제1장 직제 양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 3)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상담소의 명칭·위치 관할구역(제8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양주군 농업기술센터	광적면 광사리	
회천읍 농업인상담소	회천읍 덕정리	회천읍 전지역
양주읍 농업인상담소	양주읍 남방리	양주읍 전지역
백석읍 농업인상담소	백석읍 오산리	백석읍 전지역
온현면 농업인상담소	온현면 선암리	온현면 전지역
남면 농업인상담소	남면 신산리	남면 전지역
광적면 농업인상담소	광적면 가남리	광적면 전지역
장흥면 농업인상담소	장흥면 일영리	장흥면 전지역

(추4)

제3편 총무 제1장 터체 양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별표 4)

사업소의 명칭·위치(제11조제2항 관련)

사 업 소 명	위 치
양주군 문화관광사업소	양주군 광적면 광석리 132
양주군 상수도사업소	양주군 회천읍 덕정리 138-42

(주4)